

도이치은행 서울 지점 전자 플랫폼 이용약관

(DEUTSCHE BANK AG, SEOUL BRANCH Electronic Platform Terms)

하기 약관(이하 “본 약관”이라 합니다)은 귀하 또는 기타 제 3자(이하 각각 “사용자”라 합니다)가 귀하의 고용자, 타인 또는 조직(이하 각각 “고객”이라 합니다)을 대리하여 플랫폼(이하 정의됨)을 이용하거나 이에 접근하여 서울 지점을 통해 _ 행위하는 도이치은행으로부터 호가를 제공 받거나 도이치은행과 거래를 체결하는 것과 관련하여 적용됩니다. 귀하는 귀하가 각 고객으로부터 고객을 대리 또는 대표하여 본 약관에 동의할 권한을 부여 받았음을 진술 및 보장합니다. 다른 의미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고객”은 사용자와 고객을 총칭합니다.

본 약관에 포함된 상호 의무를 고려하여,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이 합의합니다.

1. 거래 호가(Trade Prices)

(a) 도이치은행은 고객이 플랫폼을 통해 수시로 요청하는 특정 외환 현물 및 장외파생거래(이하 “거래”라 합니다)를 체결하기 위해 제 3자(이하 각각 “플랫폼 운영자”라 합니다)가 운영하는 하나 이상의 전자 거래 플랫폼(이하 각각 “플랫폼”이라 합니다)을 통해 고객에게 호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각 호가는 그 종료 시점 또는 도이치은행이 철회하는 기타 시점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 전까지 거래 지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 호가는 고객이 해당 거래통화와 결제일자의 새로운 호가를 수락한 때에 종료됩니다. 다만, 각 호가는 (해당 호가가 도이치은행의 서버에서 다른 호가로 대체되었거나 특정 호가 스트림(stream)이 중단된 경우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조기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고객은 도이치은행이 본 약관에 따라 플랫폼을 통해 고객에게 제공한 호가와 기타 조건이 도이치은행이 다른 고객에게 제공하는 호가 및 조건과 다를 수 있으며, 거래 체결 전에는 외환시장의 변동 등의사유로 철회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플랫폼에서 고객에게 제공되는 호가는 오로지 참조용으로서 변동될 수 있으며, 도이치은행과의 거래 체결을 청약, 유인 또는 합의하거나 도이치은행에 대한 청약, 유인 또는 주문을 권유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고객은 거래를 체결하거나 (도이치은행이 허용하는 경우) 기존 거래를 수정, 연장 또는 통합하기

위한 청약을 희망하는 경우, 본 약관에 명시된 방법으로 거래지시를 제출해야 합니다. 거래는 도이치은행이 고객의 청약을 수락하는 시점에만 체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b) 도이치은행은 고유재량으로 외환시장의 급격한 변동 등의 사유로 호가 정보를 하나 이상의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것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c) 도이치은행이 달리 서면상 동의하지 않는 한, 고객은 도이치은행이 제공한 호가를 외환거래에 참여한 직원들에게만 공개할 수 있으며, (i) 플랫폼을 통해 거래 체결 여부를 결정하고 (ii) 거래를 결제하기 위한 용도에 한하여 도이치은행의 거래체결에 적용될 수 있는 호가나 기타 조건, 및 도이치은행이 플랫폼 상에서 또는 플랫폼을 통해 제공한 정보를 이용합니다. 고객은 도이치은행이 제공한 호가나 도이치은행이나 플랫폼을 통해 제공된 기타 정보를 어떠한 방식으로든 자신의 고객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도이치은행 외 어느 제 3 자에게 판매, 라이선스, 게시, 전송 또는 기타 방식으로 전달하거나 공개할 수 없습니다. (x) 수권된 규제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소환장이나 법원 명령에 따르거나 법규정이 달리 요구하는 경우, 또는 (y) 도이치은행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2. 거래

(a) 고객은 플랫폼 운영자가 해당 플랫폼과 도이치은행에 대하여 지정한 절차를 거쳐 플랫폼을 통해 거래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각 거래지시는 도이치은행이 수시로 규정하는 조건을 포함하고 아래 명시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고객의 거래지시는 거래 체결에 대한 청약을 구성하고, 도이치은행은 본 약관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자신의 재량으로 이를 이행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도이치은행은 거래지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도이치은행이 어느 거래지시를 수락한다고 하여 도이치은행이 그 후속 거래지시를 수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b) 도이치은행이 고객으로부터 거래지시를 수령하는 경우, 도이치은행이 거래 체결을 위해 해당 거래지시를 검토하기 전에 일시적인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제조치는 www.db.com/FXDisclosures (또는 도이치은행이 고객에게 수시로 통지하는 다른 웹사이트, 웹페이지 및/또는 인터넷 주소)에 도이치은행이 어떻게 외환거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지를

게시한 도이치은행의 외환거래 공개설명서(FX Disclosure Statement)(“공개설명서”)에 보다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c) 도이치은행의 거래지시 체결(이는 도이치은행이 거래지시를 수락한 때에 이루어짐)은 도이치은행과 고객(또는, 해당하는 경우, 고객이 대리하는 해당 제 3 자) 사이의 구속력 있는 거래 합의를 구성합니다. 고객은 거래지시를 플랫폼에 제출한 직후 거래 체결(또는 거절)에 대한 메시지를 플랫폼을 통해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 도이치은행의 E-고객 서비스(E-Client Services, 이하 “ECS”라 합니다) 그룹사(또는 도이치은행이 해당 목적으로 지정한 기타 그룹사)에 신속히 연락하여야 합니다.

(d) 위 (c)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객에게 전달되어 체결된 상품 호가가, 호가 입력 오류 혹은 호가 전송시의 기술적 오류 등의 이유로 전달 당시의 일반적인 시세와 현저한 차이가 있어 위 호가제시행위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고, 해당 거래가 아직 완전히 정산되지 아니한 경우, 도이치은행이나 고객은 관련 법률이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한, 해당 거래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항의 해지권을 행사하는 자가 도이치은행인 경우, (i) 위 거래체결 시점의 일반적인 시세를 객관적 관점에서 알 수 있는 자료(해당 거래가 체결된 플랫폼 혹은 업계에서 통용되는 다른 플랫폼에 게시된 다른 시장가격 등을 의미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를 고객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ii) 고객이 위 거래를 체결하기 위하여 소모한 비용을 객관적인 관점에서 보여주는 자료를 은행에 제출하는 경우 해당 비용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오해의 여지를 피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위 일반적인 시세와 실제 거래 체결가격의 차액 등 가정적 혹은 간접적 손실은 위 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함).

(e) 고객은 도이치은행이 허락하는 경우 도이치은행이 규정한 방식으로 해당 플랫폼에 주문 조건을 입력함으로써 도이치은행과의 거래 체결을 위한 주문(이하 각각 “주문”이라 합니다)을 제출하고 플랫폼을 통해 기존 주문에 대한 취소 또는 변경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도이치은행이 고객이 플랫폼을 통해 주문을 제출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 별지 2 규정이 적용됩니다.

(f) 고객은 플랫폼을 통해 체결된 각 거래가 시장 관행에 따라 결제되고 거래 당사자들 간에 체결된 해당 유형의 거래에 대한 ISDA 기본계약이나 그에 준하는 계약(“기본계약”)이 적용되는데 동의합니다. 본 약관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고객은 본 약관의 어떠한 조항도 기본계약의 조항을 대체하지 아니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g) 도이치은행이 달리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고객은 각 플랫폼의 사용과 그로 인해 체결되는 모든 거래와 관련하여 본인으로서 행위하여야 합니다.

도이치은행이, 고객이 플랫폼 사용 시 제 3자를 대리하는 대리인의 자격으로 행위할 수 있음에 동의한 경우, 고객은 대리인의 자격으로 플랫폼을 통해 체결한 각 거래가 도이치은행이 수시로 통지 및 합의한 제 3자들을 대리하여 체결됨을 계속적으로 진술 및 확약합니다. 고객은 고객이 대리하는 각 제 3자를 구속하고 거래와 관련하여 그 제 3자를 대리할 필수적인 권리와 권한이 있음을 확인하며 제 3자를 대리하여 플랫폼을 통해 거래 체결 시 해당 제 3자가 부여한 권한 및/또는 투자 지시 조건에 따라 행위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제 3자가 고객이 제 3자를 대리하여 도이치은행과 플랫폼을 통해 체결한 거래가 적법한 권한 없이 이루어졌다거나 적합하지 않았거나 고객이 도이치은행에 허가한 정보 공개와 관련된 것이 아니었다는 청구를 제기한 결과, 그 청구로 인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생한 일체의 손해, 손실, 비용 및 경비는 고객이 전부 부담하기로 합니다(다만, 법원이 위와 같은 고객의 행위에 제 3자를 대리할 정당한 권한이 없음을 알지 못하였음에 도이치은행이 법령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는 예외로 함).

3. 개인 데이터의 이용

(a) 은행은 대한민국의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정보보호법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을 준수하며, 위 법률의 규정과 본 약관의 규정이 상충하는 경우 대한민국 법률이 우선합니다.

(b) 전항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즉, 법률상 요구되는 고객의 동의 등을 받은 범위 내에서), 고객은 도이치은행과 각 플랫폼이 (i) 고객과 도이치은행이 플랫폼을 통해 교환한 전자적 또는 기타 통지와 (ii) 고객이 플랫폼을 이용하는 동안 제공 또는 입력하거나 플랫폼을 통해 수집된 모든 자료, 정보 및 데이터(고객이 플랫폼에서 제출한 주문 또는 거래지시의 일부로 포함된 여하한 데이터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를 기록(컴퓨터 또는 기타 수단의 활용 여부를 불문함), 보관, 자동 처리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객은 이러한 정보를 도이치은행에, 도이치은행 내부에서, 해외로 이전하고 송출(export)하는 것에 동의하고, 도이치은행이 이러한 정보 처리와 이용에 대한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고객은 도이치은행과 고객

사이에 체결된 유효하고 집행 가능한 비밀유지계약에 의해 금지되는 경우가 아닌 한 도이치은행과 그 모든 지점 및 계열사와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플랫폼을 통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모든 고객 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c) 도이치은행은 관할권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관련 법률(유럽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EU) 2016/679))을 포함하되 그에 한정되지 않으며 <http://cib.db.com/legal-resources/privacy-notice.htm>(또는 고객이 수시로 통지하는 기타 웹사이트)에 수시로 게재되는 개인정보보호 통지에 보다 상세히 기재되어 있음)에 따라 고객 및/또는 사용자와 관련하여 플랫폼을 통해 수령한 개인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4. 접근 관련 의무 및 책임

(a) 고객은 각 사용자가 플랫폼을 통해 도이치은행과 거래를 체결 및 이행할 수 있는 권능과 권한이 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고객은 고객을 대리하여 거래를 체결 및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은 자들만 플랫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고객은 도이치은행이 적법하게 권한을 받은 고객의 대리인이 플랫폼을 이용한 사실(또는 이용하였다는 주장)을 해당 대리인이 고객을 대리하여 플랫폼에서 거래를 체결 및 이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입증하는 증거로서 신뢰할 수 있으며 고객 및/또는 고객의 수권 사용자가 본 약관에 따라 부여하거나 부여한 것으로 보이는 동의, 통지, 지시 또는 기타 의사를 질의 없이 신뢰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고객은 플랫폼을 통하여 고객을 대리하여 거래한자가 고객의 진정한 수권 사용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고객을 대리하여 체결한 거래와 관련하여 도이치은행에 부담하는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b) 고객은 (i) 플랫폼상의 어떠한 내용도 도이치은행의 추가 조치 없이 고객이 수락하면 계약상 의무를 발생시키는 청약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ii) 도이치은행이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는 정보는 자문(거래체결이나 플랫폼을 통해 증권, 투자 또는 거래의 적합성이나 수익성과 관련된 법률, 세금 또는 회계자문이나 투자자문과 관련된 경우를 포함하되 그에 한정되지 않음) 또는 증권이나 기타 금융상품에 대한 청약, 유인, 권유 또는 추천의 의도가 없으며, 어떠한 방식으로든 고객의 특정 투자목적, 재무상태 또는 요구를 반영하여 맞춤 제공되지 않으며, (iii) 고객은

투자결정을 내리기 전에 특정 투자목적, 재무상태 및 요구를 반영하는 독자적인 재무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도이치은행이 플랫폼을 통해 고객에게 제공하는 정보는 고객의 목적상 완전하거나 최신의 정보가 아닐 수 있습니다.

(c) 고객이 플랫폼 또는 그 일부에 접근하여 이를 이용함에 있어 해당 플랫폼 제공자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문서를 숙지하는 것은 고객의 책임입니다.

5. 보장의 부인

관련 법률이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도이치은행이나 그 계열사 또는 그 각 이사, 대리인이나 직원은, (i)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도이치은행의 호가를 포함하되 그에 한정되지 않음)의 적시성, 정확성 또는 완전성, (ii) 고객 또는 누구나 플랫폼을 사용하여 얻는 결과, (iii) 제 3자가 제공하거나 플랫폼 상에서 또는 플랫폼을 통해 접근 가능한 정보, 및 (iv) 지속적인 플랫폼 접근, 도이치은행의 호가, 플랫폼을 통한 기타 기능, 또는 상시적인 플랫폼 연결이나 상시적인 운영과 관련된 어떠한 진술이나 보장도 하지 않습니다.

고객은 플랫폼을 통한 전송이 비밀로 간주되지 아니함을 인정하고, 도이치은행은 플랫폼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밀의 침해에 대하여, 그러한 침해가 도이치은행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것임이 관할권 있는 법원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는 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 조와 제 6 조간의 상충이 있는 경우, 제 6 조가 우선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도이치은행이 고객에게 합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정보를 제한하는 법적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이치은행이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는 정보는 특정 국가 거주자에게만 제공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플랫폼을 통해 도이치은행 호가 및 기타 정보를 수령하거나 이에 접근하는 자들은 플랫폼에 접근한 장소의 관할국가에서 부과되는 제한사항들을 스스로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6. 책임의 제한

(a) 도이치은행이나 도이치은행의 어느 계열사 또는 그 각 이사, 임직원이나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고객이 플랫폼을 사용한 결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손해 또는 청구에 대하여, 은행은 다음 사고에 대하여는 고객에게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 (i) 고객의 접근매체 (사용자 식별정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 (ii)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또는
- (iii)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 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b) 다만, 사고 발생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고객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은행이 입증하는 경우 도이치은행이나 그 계열사 또는 그 각 이사, 임직원이나 서비스 제공업체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i) 고객이 권한 없는 자에게 사용자식별정보의 사용을 대여하거나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 (ii) 고객이 제 3 자가 권한 없이 사용자식별정보를 사용할 수 있음을 알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식별정보를 노출, 누설 또는 방치한 경우,
- (iii) 도이치은행이나 플랫폼 제공자가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또는
- (iv) 고객이 위 (iii)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 · 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 a) 누설 · 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 b) 제 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7. 기타

(a) 개정. 본 약관에 대한 개정은, 개정사항의 효력발생일로부터 최소 1 개월 전에 해당 플랫폼(들)에 게시되거나 도이치은행이 기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방식으로 게시하고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법률변경으로 인한 긴급한 개정의 경우 해당 개정의 효력발생 후에 게시하고 통지될 수 있음). 위 고객에 대한 통지는 고객이 그러한 본 약관 개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개정의 예정효력발생일 이전에 본 약관을 해지할 권리를 갖고, 그러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고객은 본 약관 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고객은 본 약관 개정의 효력발생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개정사항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b) **해지.** 도이치은행은 다음 각 호의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 언제든지 고객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통지한 후 본 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i) 도이치은행과 고객 또는 고객이 대리하는 펀드/계좌 간의 기본계약상의 의무를, 고객 또는 (해당하는 경우) 고객이 대리하는 해당 펀드/계좌가 불이행하거나 불이행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다만, 기본계약에서 정한 즉시 해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약관 역시 고객에 통지 발송과 동시에 즉시 해지 가능),
- (ii) 고객 또는 (해당하는 경우) 고객이 대리하는 해당 펀드/계좌가, 해당 기본계약상 필요한 담보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다만, 기본계약에서 정한 즉시 해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약관 역시 고객에 통지 발송과 동시에 즉시 해지 가능),
- (iii) 도이치은행이 도이치은행 또는 고객의 본 약관 이행이 관련 법률 또는 규정에 위배 또는 상충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만, 위 법규 위배의 상황이 관련 법률 혹은 규정의 취지상 객관적으로 보아 치유 불가능한 경우 통지 발송과 동시에 즉시 해지 가능), 또는
- (iv) 고객이 본 약관상의 고객의 진술 또는 확약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그 위반이 중대한 것이며 그로 인하여 본 약관의 목적 달성이 통상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통지발송과 동시에 즉시 해지 가능)

본 약관의 해지 시, 고객은 요청에 따라 도이치은행으로부터 제공 받은 콘텐츠나 기타 자료를 신속히 도이치은행에 반환하거나 파기하여야 합니다. 모든 당사자들은 플랫폼을 통해 이미 체결된 거래들을 종결할 의무를 계속 부담합니다. 제 5 조 내지 제 7 조의 조항은 본 약관의 만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c) **준거법 및 관할.** 본 약관과 본 약관으로 인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계약적 의무들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규율 및 해석되고, 본 약관으로 인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본 약관으로 인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계약적 의무와 관련한 분쟁을 포함)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은 대한민국 법원이 전속적 관할권을 갖는 데 확정적으로 동의합니다.

(d) **양도.** 고객은 도이치은행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약관을 양도하지 아니합니다.

(e) **권리 불포기.** 도이치은행이 본 약관상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행사를 지체한 경우라도 도이치은행이 해당 권리를 포기하거나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권리를 일회적 또는 부분적으로 행사한 경우에도 해당 권리를 추후 또는 추가적으로 행사하거나 다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하한 권리 행사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본 약관상의 다른 권리에 대한 행사 포기나 변경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8. 기록

고객은 (i) 플랫폼에 게시된 정보와 플랫폼을 통해 이행된 거래에 관한 도이치은행의 로그 또는 기록과 본 약관이 플랫폼의 사용으로 인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게시된 소송의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 및 (ii)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플랫폼을 통해 이행된 거래에 관한 도이치은행의 기록은 그 콘텐츠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라는 점에 동의합니다.

9. 약관의 수락

귀하는 귀하가 긍정의 의미로 ["수락"] 버튼을 클릭하는 경우 본 약관에 구속되는 것에 각 고객을 대리하여 동의하게 된다는 점과 각 고객은 본 약관 조건에 따라 도이치은행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아울러, 귀하는 해당 플랫폼(들)상의 거래를 위해 각 해당 고객의 법적 신분을 도이치은행에 통지하여 승인을 받았음을 본 약관의 존속기간 동안 진술 및 보장합니다. 또한, 귀하는 귀하가 본 약관을 수락하는 경우 귀하가 각 고객을 구속하기 위해 필요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을 도이치은행에 진술하게 되는 것임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수락]

별지 2

주문

도이치은행이 고객이 플랫폼을 통해 주문을 제출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본 약관을 보충하고 그 일부에 해당하는 아래 추가적 조건이 플랫폼 사용에 적용됩니다.

도이치은행은 고유 재량에 따라 고객이 플랫폼을 통해 제출한 주문을 접수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도이치은행에 접수된 주문(이하 “접수된 주문” 이라 합니다)은 도이치은행의 고유 재량에 따라 사후에 고객에게 반환될 수 있습니다. 주문의 접수 또는 거절은 도이치은행이 이를 결정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문의 접수는 도이치은행과 고객 간에 구속력 있는 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도이치은행이 거래 체결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객은 주문 체결 전에 플랫폼을 통해 주문의 수정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있거나, 그러한 요청을 하는 시점에 해당 플랫폼에서 수정 또는 취소 기능이 이용 불가능할 경우, 고객은 도이치은행의 해당 거래 담당 트레이더 또는 영업직원에게 전화 또는 전자 통신수단(이메일 포함)으로 연락하여 주문 체결 이전에 주문의 수정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도이치은행은 시장가격의 변동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주문 수정 또는 취소 요청을 접수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도이치은행은 주문 접수 후 언제든지 고객이 지정한 체결 최종 시점(이하 “종료 시점” 이라 합니다) 전까지 또는 도이치은행이 고객의 주문 수정 또는 취소 요청을 접수한 경우 그 전까지 접수된 주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결할 수 있습니다. 종료 시점까지 체결되지 않은 접수된 주문(또는 접수된 주문의 일부)는 해당 종료 시점에 종결됩니다. 도이치은행에 의한 접수된 주문(또는 접수된 주문의 일부)의 체결(이는 해당 주문이 외국환 시장에서 –또는 도이치은행의 기타 처리장소, 사무실 또는 계열사에서 –체결된 사실로써 입증되어야 함)은 해당 주문의 조건에 따른 거래에 관한 구속력 있는 합의를 구성합니다.

특정 유형의 지시와 관련하여 시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반영하여 본 약관 또는 플랫폼에서 사용된 “주문(들)”의 의미에도 불구하고, 본 약관에서 “주문” 이란 고객(또는, 해당하는 경우, 고객이 대리하는 해당 펀드/계좌)이 해당 주문의 거래 가격과 기타 요소들과 관련하여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이치은행을 신뢰할 수 있다거나, 도이치은행이 해당 거래와 관련하여

고객, 또는 제 3 자에 대하여 “주문” 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았을 경우 도이치은행이 해당 당사자와의 관계에서 해당 당사자에 대하여 달리 부담하였을 의무 이외에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도이치은행은 체결된 주문을 포함하여 플랫폼에서 체결된 거래의 상세 내역을 포함한 거래 기록에 대한 접근권한을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이치은행은 접수되었으나 아직 체결되지 않은 주문의 상세 내역을 포함한 주문 기록에 대한 접근권한도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